

## 「재해공제급부제도」 안내

「재해공제급부제도」는 학교, 유치원 및 보육소(이하, 「학교」라고 한다.)의 관리하에서 아동, 생도, 학생 또는 유아(이하, 「아동생도 등」이라고 한다.)의 재해(부상, 질병, 장애 또는 사망)가 발생했을 때에 재해공제급부(의료비, 장애위로금 또는 사망위로금의 급부)를 실시하는 국가·학교 설치자·보호자의 3자 부담에 의한 부조공제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법에 의거한 공적급부제도가므로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습니다.

### ■재해공제급부제도의 특색■

- 낮은 납부금으로 넉넉한 급부가 이루어집니다
- 학교의 책임 유무에 관계 없이 급부 대상이 됩니다
- 학교의 책임하에 제공한 음식물에 의한 O-157 등의 식중독, 일사병이나 소위 돌연사도 급부 대상이 됩니다

### 급부 대상이 되는 「학교의 관리하」와 재해의 범위

#### ■학교 관리하의 범위

①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에 의거한 수업을 받고 있는 경우 (보육소에서의 보육중을 포함합니다)	예) 각교과(과목), 유치원에서의 보육중, 특별활동중(학급활동, 클럽 활동, 운동회, 소풍, 수학여행 등)
②학교의 교육계획에 의거한 과외지도 받고 있는 경우	예) 동아리활동, 임간학교, 여름방학중의 수영지도
③휴게시간, 기타 교장의 지시·승인에 의거하여 학교에 있는 경우	예) 수업 시작전, 쉬는시간, 점심시간, 방과후
④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해 통학(통원)하는 경우	예) 등교(등원)중, 하교(하원)중
⑤기타,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	예) 기숙사에 있을 때, 학교밖에서 수업 등이 진행될 때에 그 장소 또는 기숙사와 주거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·방법으로 왕복할 때

#### ■재해의 범위

재해의 종류	재해의 범위	급부 금액			
부상	학교의 관리하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요양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금액이 5,000엔 이상인 것	의료비			
질병	학교의 관리하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요양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금액이 5,000엔 이상인 것 중에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것 (급식 등에 의한 중독 ·가스 등에 의한 중독 ·익수 ·일사병 ·이물질 삼킴 또는 혼입에 의한 질병 ·옷 등에 의한 피부염 ·외부충격 등에 의한 질병 ·부상에 의한 질병)	· 의료보험 수준의 요양에 필요로 하는 비용 금액의 4/10 (그 중 1/10의 분은 요양에 따라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가산되는 분) 단, 고액요양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자기부담액(소득구분에 의해 한도액수가 정해져 있다.)에 「요양에 필요로 하는 비용월액」의 1/10을 가산한 금액. 그리고 입원시 식사요양비의 표준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			
장애	학교의 관리하의 부상 및 상기 란의 질병이 나온 후에 남은 장애로 그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된다	장애위로금 3,770만엔~82만엔 [통학(원)중의 재해인 경우 1,885만엔~41만엔]			
사망	학교의 관리하의 사유에 의한 사망 및 상기 란의 질병에 직접 기인하는 사망	사망위로금 2,800만엔 [통학(원)중의 경우 1,400만엔]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20px;">돌연사</td> <td>학교의 관리하에 운동 등의 행위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학교의 관리하에 운동 등의 행위가 기인 혹은 유인이 되어 발생한 것</td> </tr> </table>	돌연사	학교의 관리하에 운동 등의 행위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		학교의 관리하에 운동 등의 행위가 기인 혹은 유인이 되어 발생한 것
돌연사	학교의 관리하에 운동 등의 행위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				
	학교의 관리하에 운동 등의 행위가 기인 혹은 유인이 되어 발생한 것				

(주: 위로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 이후에 급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금액입니다.)

- \*1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가 급부하는 의료비는 의료보험(건강보험, 국민건강보험 등)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받을 수 있는 요양을 대상으로 하며, 그 요양 비용의 금액도 의료보험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. 상기 표에서는 이것을 「의료보험 수준의 요양」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.
- \*2 상기 표의 「요양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금액이 5,000엔 이상인 것」이란 조건에서 치유까지의 의료비총액(의료보험에서 말하는 10월분)이 5,000엔 이상인 것을 합니다.(예를 들면, 피부양자(가족)인 자가 병원에 외래수진한 경우, 보통 자기부담은 의료비총액의 3월분이 됩니다.)
- \*3 동일 재해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의 지급은 조건에서 최장 10년간 이루어집니다.
- \*4 재해공제급부를 받을 권리는 그 급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없어집니다.
- \*5 재해공제급부의 급부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그 가액 한도에서 급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\*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급부 등(예:조례에 의거한 유아의료조성)을 받았을 때는 그 한도에서 급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\*7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에 속하는 의무교육 재학교·보육소의 아동생도에 관련된 재해에 대해서는 의료비 급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\*8 고등학교 학생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이 자기의 고의적 범죄행위에 의해, 또는 고의로 부상을 입거나,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는 해당 의료비, 장애 또는 사망에 관련된 재해공제급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\*9 고등학교 학생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이 자기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,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는 해당 장애 또는 사망에 관련된 재해공제급부의 일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
## 가입수속과 공제납부금의 금액

재해공제금부에 가입은 학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납부금을 모으고, 학교의 설치자가 일괄가입 수속을 합니다. 다음해부터는 공제납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입은 계속됩니다.

### ◎ 2012년도 공제납부금의 금액 (아동생도 등 1인당 연액 단위:엔)

학교 종별	일반 아동생도 등	요보호 아동생도
의무교육 제학교	920(460)	40(20)
고등학교	전일제	1,840(920)
	정시제	980(490)
	통신제	280(140)
고등전문학교	1,880(940)	-
유치원	270(135)	-
보육소	350(175)	40(20)

※ ( )내는 오키나와현의 공제납부금액입니다.

※ 공제납부금 중 의무교육 제학교에서는 4학에서 6학, 기타 학교에서는 6학에서 9학을 보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학교 설치자가 부담합니다.

※ 재해공제금부 계약에 면책 특약을 한 경우는 왼쪽 표의 금액에 1인당 25엔(고등학교 통신제는 2엔)을 추가한 금액이 공제납부금 금액이 됩니다.(면책 특약에 관련된 공제납부금분은 전액 설치자 부담).

## 급부를 받기 위한 수속

<예> 학교의 관리하에서 재해를 만나 병원 등에 갔을 때 【의료비 청구】

(1) 학교에서 재해 발생상황 등을 증명하는 「재해보고서」를 작성합니다.

보호자는 「의료 등의 상황」 용지를 학교에서 받아(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) 수진한 의료기관에 지참하여 진료점수 등의 증명을 받습니다. 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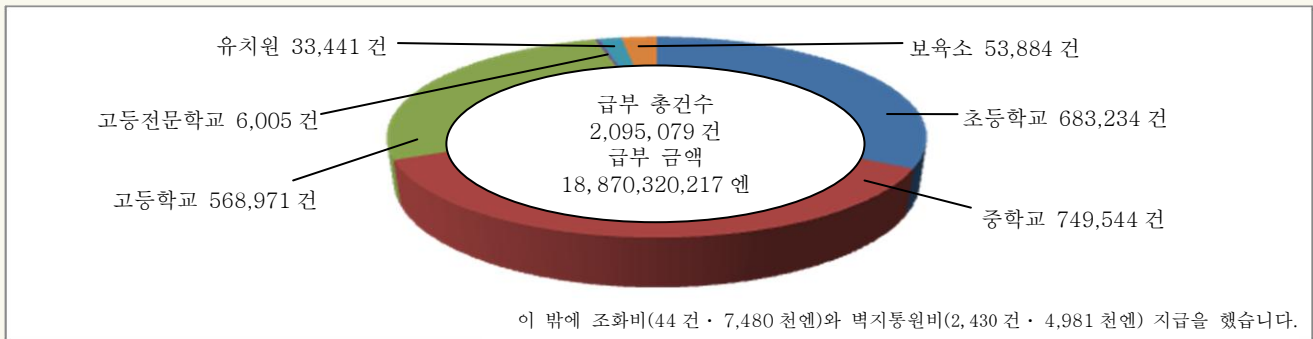
(2) 설치자는 (1)의 서류를 포함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 각지소에 제출합니다.

(3) 센터 각지소에서 심사를 거쳐 급부금액을 결정하고 설치자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지불합니다.

※ 그자리에서 즉시 써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의사 등의 사정을 확인한 후에 부탁하도록 해 주십시오.

이처럼 청구·급부 수속은 학교·학교설치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.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학교의 지시를 받아 필요서류를 갖추거나 치료 경과를 수시로 보고하는 등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부탁드립니다.

## 2010년도 재해공제금부 지급건수 (의료비·장애·사망위로금 합계)



재해공제금부에 대해서는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법(2002년 법률 제162호)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. 이 「제도 안내」는 재해공제금부제도 개요를 기재한 것입니다.



###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 [NAASH]

학교안전Web (<http://www.naash.go.jp/anzen>)

■ 재해공제금부제도 전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: 학교안전부 재해공제과 Tel 03-5410-9164

■ 급부금 청구 및 지불에 관한 사항 : 아래 담당지소

센다이 지소	(미야기현, 홋카이도, 아오모리현, 이와테현, 아키타현, 야마가타현, 후쿠시마현) 〒980-0011 仙台市 青葉区 上杉1-5-15 日本生命 仙台匂当台南ビル 8階	Tel 022-716-2106
도쿄 지소	(도쿄도, 이바라키현, 도치기현, 군마현, 사이타마현, 지바현, 가나가와현, 니가타현, 야마나시현, 나가노현) 〒160-0013 新宿区 霞ヶ丘町10-1 独立行政法人 日本スポーツ振興センター 本部庁舎 3階	Tel 03-5410-9165
나고야 지소	(아이치현, 도야마현, 이시카와현, 후쿠이현, 기후현, 시즈오카현, 미에현) 〒450-0001 名古屋市中村区 那古野1-47-1 名古屋国際センタービル 16階	Tel 052-533-7821
오사카 지소	(오사카부, 시가현, 교토부, 효고현, 나라현, 와카야마현) 〒530-0001 大阪市 北区 梅田1-11-4 大阪駅前 第4ビル 7階	Tel 06-6456-3601
히로시마 지소	(히로시마현, 돗토리현, 시마네현, 오카야마현, 야마구치현, 도쿠시마현, 가가와현, 에히메현, 고치현) 〒730-0011 広島市中区 基町9-32 広島市水道局 基町庁舎 10階	Tel 082-511-2822
후쿠오카 지소	(후쿠오카현, 사가현, 나가사키현, 구마모토현, 오이타현, 미야자키현, 가고시마현, 오키나와현) 〒810-0001 福岡市 中央区 天神4-8-10 都久志会館 5階	Tel 092-738-8720

□ NAASH 학교안전부에서는 재해공제금부제도를 활용하여 학교재해 감소를 목적으로 한 학교안전지원 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학교안전Web 홈페이지에서 재해 사례 및 사고대책 등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해 주십시오.